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 2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 후 명칭: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 2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 모자형으로 전환하여 해당 명칭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투자제한 등 변경
- 모자펀드간 수탁사 상이할 경우 수탁사 보수 분배관련 조항 추가

3.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 2017 년 3 월 30 일

4.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칭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제2조(용어의 정의)			
1. ~2. <생략>		1. ~2. <현행과 동일>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로, 이 신탁계약에서는	
4.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법시행령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을 말한다.	
제240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4.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채권 및 특별자산을 제외하며, 제외대상 자산		매입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투	자신탁을 말한다.		
5. ~8. < 생략 >		5. ~9. <현행과 동일>	
추가		10. "모자형" 이라 함은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	하는 구조로서
		자투자 신탁이 모투자신탁 수	익증권 외의 다른
		<u>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u>	<u>투자신탁 외의</u>
		자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u>취득하는 것이</u>

<u>허용되지 않으며 자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의</u>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 ① 투자신탁의 명칭은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라 한다.
-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 │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
- 1. 투자신탁
- 2. 증권(혼합채권형)
- 3. 개방형
- 4. 추가형
- 5. 종류형
- <추가>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라

- 1. 투자신탁
- 2. 증권(혼합채권형)
- 3. 개방형
- 4. 추가형
- 5. 모자형
- 6. 종류형

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하

"주식증권모투자신탁"이라 한다)

2.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이하 "채권증권모투자신탁"이라 한다)

3.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이하 "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이라 한다) 이하 <기존과 동일>

이하 <생략>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③<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16조(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신탁재산의 채권증권모투자신탁과 2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국내 채권과 국내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 신탁재산의 2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부담할 수 있다. 채권은 발행자의 부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 발생에 채권증권모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를 따른 채무불이행위험과 시중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주된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국내주식에 신탁재산의 20%이하를 투자한다. 또한 주식증권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므로 수익자는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채권은 발행자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과 시중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1. 제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2. 법 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하하다)
-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개별주권, 금리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및채권관련 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7.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 9. 증권의 차입
- 10. 법 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제1호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채권증권모투자신탁과

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 5.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 7.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현금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

<u>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u>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u>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2호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까지 투자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 9.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행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11.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③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25-1조(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규추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0|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 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다.

제26-1조(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신규추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현금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1 ~③< 생략 > ① ~③<현행과 같음>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u>으로 지급할 수 있다.</u>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생략 >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 9 < 생략 >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신규추가>

② ~ 9 < 현행과 같음 >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9-1조(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규추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50%에 해<u>당하는 금액(이하</u>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한다)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② <현행과 동일>

③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 의 경우에는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게시된 날 또는 통보된 <u>날을 포함</u>)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된 바에 따른다.<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u>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 ~② <현행과 동일>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① ~② <현행과 동일>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u>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u>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손해배상책임)

- ①<현행과 동일>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 따른 회사(법 제258조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①<현행과 동일>
-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 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